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

(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

2001.02.08. 제정 2001.12.19. 개정 2004.01.06. 개정 2005.12.22. 개정 2009.03.17. 전면개정 2011.12.22. 자동개정 2015.12.22. 개정 2020.10.21. 개정 2020.11.24. 개정 2021.07.30. 개정 2021.12.29.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FPSB의 "재무설계업무수행기준(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 (이하 "업무수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한국에프피에스비(이하 "한국 FPSB"라 한다)의 CFP 자격인증자 및 AFPK 자격인증자(이하 "자격인증자"라 한다)의 개인재 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 이하"재무설계"또는"Financial Planning"이라 한다) 업무수 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격인증자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업무수행 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업무수행기준은 자격인증자가 재무설계 업무수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 제3조(업무의 수행과정) 업무수행 6단계는 다음표의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과 각 과정별로 제시된 업무수행내용으로 구성된다. 단, AFPK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업무수행 시 능력개발의 원칙에 따라 CFP 자격인증자의 지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과정별 업무수행내용
(Financial Planning Process)	(Related Practice Activities)
고객과의 관계정립 (Establish and Define the Relationship with Client)	 재무설계 및 자격인증자의 역량에 대한 정보 제공 고객 니즈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결정 업무수행범위의 결정
고객관련 정보의 수집 (Collect the Client's Information)	1.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의 파악 2. 계량정보 및 자료의 수집 3. 비계량정보의 수집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Analyze and Assess the Client's Financial Status)	1. 고객관련 정보의 분석 2.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의 평가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Develop the Financial Planning Recommendations and Present them to the Client)	 재무설계 대안의 파악 및 평가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재무설계 제안서의 제시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Implement the Financial Planning Recommendations)	1. 실행책임에 대한 상호합의 2. 실행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선별 및 제시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Review the Client's Situation)	1. 고객상황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및 조건에 대한 합의 2. 고객상황의 모니터링 및 재평가

제2장 고객과의 관계 정립

제4조(재무설계 및 자격인증자의 역량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제공하는 서비스, 자격인증자의 역량 및 업무 경력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고객과의 관계정립 단계에서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의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와 과거 재무설계의 경험을 파악하여야 한다.
- ③ 자격인증자는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생애주기목표와 그에 따른 재무목표를 평가하여야 한다. (자격인증자는 제11조와 관련된 활동 중에 고객이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④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목적을 파악하여 종합 재무설계 또는 영역별 재무설계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및 재무설계 업무수행계약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격인증자가 보유한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4조 제5항과 같은 정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무설계가 고객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이유
 - 2. 재무설계 업무수행방법
 - 3. 자격인증자의 보유자격과 경험 및 전문분야에 대한 안내자료
- ⑦ 자격인증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자신의 서비스, 역량 및 경력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자격인증자는 고객과 이해 및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5조(고객 니즈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결정) ①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자격인증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격인증자의 역량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지 결정하여야 한다. 자격인증 자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 경력을 감안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점검하여야 하며, 또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자신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객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5조 제2항과 같은 정보에는 자격인증자의 전문역량, 경험 또는 고객과의 협력 방식이 포함되며, 이 정보를 통해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④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자격인증자가 고객의 재무 및 인생 목표와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호점검하여야 한다.
 - ⑤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요청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만한 개인적인 이해상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객의 이익과 자격인증자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또는

- 어느 한 고객의 이익이 다른 고객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상황 및 관계 또는 사실이 있는 지 파악하여야 한다.
- ⑥ 자격인증자는 제5조 제5항의 이해상충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정보의 비밀유지 방법에 대하여도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수행범위의 결정) ①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의 호를 포함하는 업무수행범위를 상호 합의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계약당사자 및 제3자를 포함하는 관련자의 책임
 - 2. 업무수행계약의 제반 조건
 - 3. 재무설계 업무의 보수에 관한 사항
 - 4. 자격인증자와의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 ② 업무수행범위는 정식 문서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또는 고객이 정식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에 대한 절차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상호 합의하여 업무수행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명확하게 상호 합의된 기대치를 수립함으로써 양당사자는 성공적인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업무수행범위는 재무설계 업무영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 재무관리, 투자설계, 위험관리, 세금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 ④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연락 빈도,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코칭 또는 기타 행동 기법의 활용여부, 그리고 당사자들이 중요하다고 동의한 기타 사항 등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재무설계 업무수행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계약사항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게 된다. 업무수행계약서는 다음의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포함되는 서비스와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구분 (예: 제안사항의 실행 또는 모니터링 등의 포함여부)
 - 2. 재무설계 업무에 대한 보수체계(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fee)를 포함한다)
 - 3. 제3자와의 보수계약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포함하여 현 시점에서 존재하는 모든 이해 상충 사항
 - 4. 향후 추가로 발생되는 이해상충 통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

- 5. 법적 계약관계 및 대리인 계약관계를 포함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당사자에 대한 사항
- 6. 고객 정보의 비밀유지에 대한 확약
- 7. 계약 기간
- 8. 고객에 대한 완전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포함하는 고객의 책임
- 9. 자격인증자의 책임
- 10. 계약의 해지 및 종료에 대한 사항
- 11. 자격인증자에 대한 고객의 클레임과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
- ⑥ 정식 문서에는 다음의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1. 계약기간 중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
 -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객과 접촉할 전문가들의 자질과 보유 전문자격 및 경력에 대한 설명
 - 3. 고객정보의 이용에 대한 제한
 - 4. 자격인증자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나, 고객 또는 상호 동의하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와 고객을 다른 자격인증자나전문가에게 소개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
 - 5. 기타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한 정보
- ⑦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범위를 결정할 때, 고객이 단기와 장기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목표의 장점과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고객과 혐의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관련 정보의 수집

- 제7조(고객의 개인적인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의 파악) ①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업무수행범위와 관련된 고객의 개인적인 목표와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현재 상태와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객의 인생 및 재무목표는 재무설계업무수행 계약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계적인 문서화에도도 움이 된다.
 - ③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언급한 목표를 통해 돈에 대한 고객의 경험, 태도 및 행동과 재무

문제에 대한 동기가 고객의 재무적 의사결정 및 자격인증자의 제안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 ④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단기와 장기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목표의 장점과 비현실적일 수 있는 목표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고객과 혐의하여야 한다.
- 제8조(계량정보 및 자료의 수집) ①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업무수행범위와 관계되는 고객에 대한 계량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범위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면 및 비대면을 통해 고객의 재무기록 또는 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기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자격인증자가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러한 제약이 업무수행계약과 재무설계 제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자격인증자는 고객과 상호 합의하에 업무수행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제9조(비계량정보의 수집) ①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업무수행범위와 관계되는 고객에 대한 비계량적인 성향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가치, 태도, 기대 그리고 재무관련 경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 경청, 질문 던지기, 호기심 및 탐구심 표현과 같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지적 수준과 재무에 관한 지식 보유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객의 비계량적인 성향 정보에 관한 분석과 판단은 주관적이며, 고객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에 따라 자격인증자의 판단과 해석에 제약이 있음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자격인증자는 대면 또는 비대면 의사소통 또는 계약을 통해 고객의 계량 및 비계량정보를 동시에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정확한지 고객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자격인증자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파악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과 공유하여야한다.

제4장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 제10조(고객관련 정보의 분석) ①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범위에 해당하는 고객관련 정보를 분석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현재 고객의 재무상태 및 정보를 분석하고, 고객이 언급한 목표 또는 수집된 정보 중 명백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정보의 보완방안을 고객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분석의 목적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충족하는 실행가능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 ④ 자격인증자는 제10조 제3항의 분석단계에서 상호 합의된 고객의 목표와 기타 합리적인 가정을 이용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가정에는 고객의 은퇴연령, 예상수명, 필요소득, 위험요인, 투자기간, 특별 니즈를 비롯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율, 세율 및 투자수익률과 같은 경제학적 가정도 포함된다.
 - ⑤ 자격인증자는 자산부채상태표, 현금흐름표, 위험요소 및 손익계산서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 제11조(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의 평가) ①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현 재무상태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이를 고객의 목표, 니즈 그리고 우선순위와 비교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재무상태 및 현행 자산운용방식에 내재된 기회, 제약 및 위험사항 등을 평가하고, 현재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와 이를 변경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고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자격인증자는 개인적인 재무문제에 대처하는 고객의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분석 절차에 참여시켜 고객 자신이 언급한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충족할 수 있는 절충안, 또는 수용 가능한 대안의 정보를 자격인증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의 생활 여건 또는 목표가 변경되거나 우선순위가 더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분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자격인증자는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계약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 제12조(재무설계 대안의 파악 및 평가) ①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고객의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대하여 적절한 여러 가지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확정된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전략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이 각 전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 전략이 어떻게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 제2항의 전략에 대한 평가시에는 고객의 목표와 니즈의 중요성, 우선순위 및 적절한 시기에 대하여 고객과 협의하거나, 여러 가지 가정을 고려하거나, 연구조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자격인증자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고객의 현행 자산운용방식에 대한 하나 또는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도 있고, 또는 고객의 현재 자산운용 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 ④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문가의 판단에는 주관성이 개입되므로 한 자격인증자가 도출한 전략이나 그 실행결과는 다른 자격인증자나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과 다를 수 있다.
- 제13조(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① 자격인증자는 확정된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선택된 전략을 토대로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다양한 전략과 고객의 현행 자산운용 방식을 파악하고 평가한 후,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재무설계 제안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일괄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위의 집합이 될 수도 있다.
 - ③ 재무설계 제안서는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현행 자산운용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현행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격인증자가 현행방식에서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특정 부분에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다. 자격인증자는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목표, 니즈 또는 우선순위를 변경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 ④ 자격인증자는 전문적 식별 및 판단 능력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평가하고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 조언의 특성상 각각의 제안서는 나름대로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한 자격인증자가 작 성한 재무설계 제안서의 내용이 다른 자격인증자나 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 과 서로 다를 수 있다.

- ⑤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자격인증자의 기술적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자산운용방식 등에 대하여 고객의 목표와 의견을 반영하여 재무설계 제안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을 적절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 제14조(재무설계 제안서의 제시) ①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제안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 사항과 합당한 근거를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제안서를 고객과 공유할 때 고객의 현 재무상태, 제안 사항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요소와 가정, 제안된 전략에 내재된 위험, 고객이 언급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서가 갖는 효과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③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의견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개인 신상, 경제 및 다른 일반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재무설계 제안서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제안서를 제시하는 이 단계에서 재무설계 제안서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고객이 제안서를 받아들여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 제안서의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 ⑥ 자격인증자가 고객과 함께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객이 예비 및 최종 제안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 제15조(실행책임에 대한 상호합의) ①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각자의 실행 책임에 대하여 상호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실행 책임의 내용은 업무수행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객이 수락한 재무설계 제안사항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격인증자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금융상품과 서비스 또는 고객의 소비 및 저축 행동 변화 등이 포함된 제안 사항의 실행 책임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 ③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제안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우선순위 및 각 실행 책임과 우발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실행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과 원래 합의하여 결정하였던 업무수행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 ⑤ 자격인증자의 실행 책임은 다음의 호를 포함할 수 있다.
 - 1. 제안서 실행에 필요한 활동 내역
 - 2. 자격인증자와 고객 각각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
 - 3.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
 - 4. 다른 전문가와의 협력
 - 5. 고객정보 공유의 허용 범위
 - 6.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선별 및 확보
- ⑥ 자격인증자가 고객에게 다른 전문가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자격 내용과 소개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⑦ 고객이 단지 제안서의 실행 만을 자격인증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범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업무수행범위에는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 분석자료 또는 제안 사항에 대한 자격인증자의 신뢰와 의존 정도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6조(실행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선별 및 제시) ① 업무수행범위를 바탕으로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수락한 재무설계 제안서에 부합되는 적절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여 제시하여 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재무상태에 적합하고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충족하는 금융상품, 서비스 또는 자산운용방식을 추천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판단으로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 서비스 또는 재무 행동의 변화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③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개별 금융상품, 서비스 또는 자산운용방식에 대한 제안을 재무설계 전략 및 제안서와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고객이 제안된 상품과 전략을 이해하고 만족한다면, 제안 사항의 실행에 협조한다는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제7장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제17조(고객상황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및 조건에 대한 합의) ①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고객

- 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평가하는 조건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무설계업무는 고객의 개인 신상, 경제 또는 다른 조건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고객의 상황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자신의 금융정보에 대해 실시간, 지속적 또는 통합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격인증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재무설계 업무수행동안 모니터링 주기는 빈번하고 상호적이며 연속적일 수 있다.
- ④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모니터링 활동의 성격 및 범위, 양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상호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래의 업무수행범위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수도 있다. 자격인증자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함께 목표 달성의 진행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설계 제안사항을 업데이트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
- 제18조(고객상황의 모니터링 및 재평가) ①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재무설계 제안서의 목표달성 과정의 진행상태를 평가하고 재무설계 제안서가 여전히 적절한지 결정하여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자 또는 고객은 고객의 목표 변경, 기존 재무설계 제안사항 재확인 또는 재무환경 및 고객 상황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모니터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③ 모니터링은 자격인증자가 재무설계 제안 사항에 대한 고객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인증자와 고객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④ 모니터링 절차에는 다음의 호가 포함될 수 있다.
 - 1. 고객과 자격인증자가 상호 합의한 재무설계 제안사항의 실행 여부의 확인
 - 2. 재무설계 제안사항의 목표 달성 과정의 진행상태에 대한 평가
 - 3. 자격인증자가 수립한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
 - 4. 고객상황의 변화 또는 목표의 변경으로 재무설계 제안서에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
 - 5. 기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사항
 - ⑤ 고객의 상황과 니즈가 변경되는 경우, 자격인증자는 고객과 함께 이미 수행한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의 단계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